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교육위원회 이 소 라 의원

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,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지난 8월 12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므로 서울시부터 임신·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가 확대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.

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 본인의 휴가만 규정하고 있음으로써, 예비 부모로서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해 제약이 있습니다.

이에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검진 및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해 공무원 일·가정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